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전기업계의 대응 방안 (2)

홍 광 표
동아건설산업(주) 이사

2. 본 론

가. WTO 체제의 출범

(3) WTO의 조직과 기능

WTO는 WTO설립협정과 부속서의 17개 다자간협정이 회원국내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간의 분쟁을 해결 또는 조정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브레톤우즈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러한 WTO의 기능과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이 WTO의 최종설립협정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WTO는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MTA)의 관리 운영을 맡고 그 목적을 촉진시킨다. 또 복수국간무역협정의 수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WTO는 설립협정에 부속된 관련된 문제에서 추가적인 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비롯하여 회원국들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을 위한 토론장 및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른 동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WTO는 부속서 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및 부속서 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실행한다.

-국제적 정책결정의 調和와 통일을 위하여 IMF, IBRD 및 기타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가진 WTO의 조직은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각료회의를 정점으로 그림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1에 나타난 WTO의 기구별 기능과 담당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료회의(Ministeral Council)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구로 WTO협정하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2)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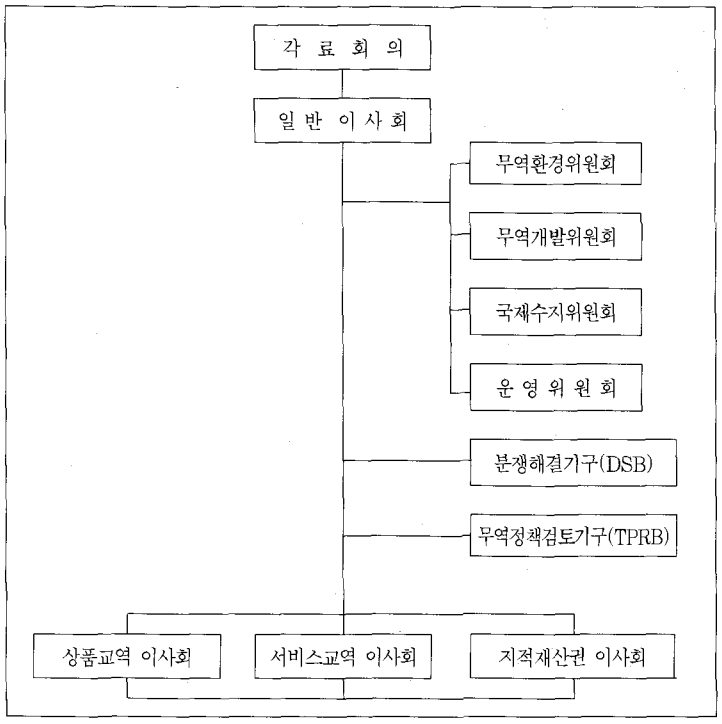

〈그림 1〉 WTO의 조직구조

일반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로 개최되어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거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로 개최되어 회원국의 무역관련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3)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상품교역이사회는 GATT 1994 및 대부분의 다자간 무역협정(MTA)을 관할하는 기능을 한다.

4) 서비스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비스교역이사회는 WTO협정 부속서 중 서비스협정(GATS)에 따라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주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를 관할하는 역할을 한다.

5)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이사회는 WTO협정 부속서 중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회원국의 관련 의무이행을 감시하며 회원국들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동 위원회는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요청한 지원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6) 무역환경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유지와 환경보전간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환경관련무역조치,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조치를 중심으로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7)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개발위원회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특혜조항을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8) 국제수지위원회(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국제수지위원회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회원국의 국제수지 관련조치의 적용, 국제수지 협의절차, 통보와 구비서류, 국제수지 협의의 결론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9) 운영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운영위원회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기구의 예산, 재정,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10)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무역관련 분쟁을 종합 관장하고 무역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11) 무역정책 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무역정책 검토기구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多者間 貿易體制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4) WTO 체제의 전망과 평가

WTO체제는 종래의 GATT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자간 국제무역기구로서 캐나다와 EC에 의하여 1990년에 제안되어 1994년 설립협정문이 채택됨으로써 국제무역질서를 종래의 GATT 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동안 GATT체제에서 저해되어 온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GATT 및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된 모든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강력한 국제무역기구로 발전되었다.

WTO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각료회의, 총회, 4개 무역이사회, 4개 위원회, 사무국 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법적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도록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두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무역관련분쟁을 통합 관장하고, 준사법적기능을 보유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WTO가 종래의 GATT와 다른 점은,

첫째,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

둘째,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식의 국제기구로서 다수의 실무적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국제무역에 대한 모든 규범을 관장한다는 점,

셋째, 의사결정방식이 종래의 전원합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2/3 또는 3/4)을 채택하여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WTO가 설립되면 미국 등 일부 강대국들에 의한 일방주의와 자국국내정책의 일방적 강요 등이 약화되고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되어 공정한 국제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그동안 국제교역질서를 규율하여 온 GATT체제가 UR협정으로 WTO체제로 대체됨으로써 GATT 규정상의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자유무역주의의 원칙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게 되었으며 그동안 GATT규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각종 예외 규정이 축소되어 多者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체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에게 유리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이 도입되었으며, 보조금이 축소되고 기술장벽이 낮아지고 정부조달협정으로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던 반덤핑제도, 섬유쿼터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가 폐지 또는 적용이 엄격해지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해왔던 여러 가지 무역제재조치들이 분쟁해결절차 등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발도상국가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쌍무협상 또는 관심국들간의 국제협약에 의하여 規律되던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및 부속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多者間 貿易規範을 엄격하게 規律하고 있다.

〈표 1〉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GATT체제	WTO체제
시장개방노력	-관세인하에 주력 -비관세장벽은 동경라운드에서 철폐노력, 그러나 선언적인 규범정립수준으로 실효성 미흡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도입으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 (모든 회색조치를 4년내 폐지)
관할 범위	상품(주로 공산품)	공산품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율 도입(다자간 섬유협정(MFA)도 WTO로 흡수
신분야 협정	없 음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도입
규범강화	-보조금정의 등 불명료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보조금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명료화로 남용 방지 -세이프가드 협정, 원산지규정, 선적전검사 협정 등을 새로이 도입

(다음호에 계속)